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1749
----------	------

□ 제안이유

- 시의회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시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의장이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본회의장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 표결제도에 있어서 의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도록 자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의장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되,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임기 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이탈한 소속 정당으로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 표결할 때에나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1항, 제44조).
- 의원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를 명문화 함(안 제42조의2).

□ 검토결과

-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의장의 당적보유금지와 표결할 안건과 표결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토록하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제를 명문화 하고자 한 것으로

먼저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적보유금지조항은 회의의 운영이라기보다는 의장의 신분문제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당법 제22조 내지 제26조 당원의 자격, 입당, 탈당 등과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1항에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회의규칙의 당적보유금지는 정당법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향후에 위헌명령심사등 위법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국회법 제20조의 2에 “의장의 당적보유금지”로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법과 정당법은 동일한 법체계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표결의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한 안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회의규칙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의장석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보다 공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장소적 개념으로 볼 경우에는 본 회의 규칙에 시청사의 주소와 건물명 및 의장석의 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후단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의 전제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자유투표제를 명문화하고자하는 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표결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규정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의 의무조항 중 한 문장인 “양심에 따라 그 직무”의 범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포함될 경우에는 의무조항의 범조문 내용을 회의규칙에 다시 명문화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세 가지의 조항들을 회의규칙에 규정한 의회는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도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련법규

《 정당법 》

○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제23조(입당)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③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24조(당원명부)①시·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③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 제25조(탈당)①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 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법 》

-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한다.
- 제113조 (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02.3.7>
- 제110조 (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114조의2(자유투표)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본조신설 2002.3.7]

《 지방자치법 》

- 제34조(의장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타 광역·기초의회의 의장당적 보유 및 의장석 선포, 자유투표제 비교표

연번	각 시 도	의장당적 보유	의장석 선포	자유투표제
1	수 원	×	×	×
2	안 양	×	×	×
3	부 천	×	×	×
4	광 명	×	×	×
5	평 택	×	×	×
6	의정부	×	×	×
7	서 울	×	×	×
8	경 남	×	×	×
9	대 전	×	×	×
10	전 북	×	×	×
11	울 산	×	×	×
12	인 천	×	×	×
13	충 남	×	×	×